

문서번호	수산팀-538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7.03.28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유통본부장
		03/28
김병일	최영규	김성수
협 조	팀장 팀장	김인수 임영규
감 사		

수산시장 내 청과물 분산차량 조치 계획

2017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
수산팀

수산시장 내 청과물 분산차량 정비 계획

추진 배경

- 수산시장 도로에서 청과물 적재 차량이 타 시장으로 물량을 분산하거나 시장 이용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어
 - 수산물 출하차량의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농수산물 유통질서 교란

I

수산시장 내 청과물 분산 차량 현황

- 분산 장소 : 서울건해 제2경매장, 건어 관련 상가 주변



물량 분산 및 판매 장소



판매 및 분산 현장

- 분산 차량 : 1일 25~35대 가량으로 추정
 - 차량 규모 : 11 ~ 22톤
- 분산 시간 : 16:00 ~ 22:00
 - 16:00부터 시장 내에 입차하여 19:00 ~ 20:00 집중 분산
- 분산 형태
 - 대형 차량에 농산물을 다량 적재하고 수산시장 도로변에 주차
 - 가락시장 내 물량 관리인(주재화주)에 의한 분산
 - 일부는 청과시장 경매로 거래되나 대부분 타 시장(구리, 청량리 등)으로 반출 되거나 시장 방문객을 상대로 판매

II

조치 계획

1 단계별 조치 내용

□ 1단계(3.27~) : 시장 외부 퇴거 지시 및 안내장 배부

○ 물량 분산 차량 시장 외부 퇴거 지시

- 수산시장에서 물량 분산 행위 불가 사유 설명
- 미 이행시 정기주차권 해지 및 과태료 부과, 형사 고발 예고

○ 물량 분산 차량 인적사항 등 조사 (서식 별첨 1)

- 차량번호, 운전자 및 출하자, 적재 물량, 물량 분산처 등

○ 수산시장 내 물량 분산행위 단속 안내장 배부 (별첨 2)

□ 2단계(4.3~) : 정기 주차권 회수

- 대상 : 3회 이상 물량 분산행위로 적발된 자
- 내용 : 주차 택 회수 및 정산 등록 말소

□ 3단계(4.10~) : 과태료 부과 요청(공사 ⇨ 서울시)

- 대상 : 5회 이상 물량 분산행위로 적발된 자
- 근거 :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, 제90조 제3항 4호
- 처분내용

횟수	1회	2회	3회
금액	25만원	50만원	100만원

□ 4단계 (4.17~) : 형사고발

- 대상 : 10회 이상 물량 분산행위로 적발된 자
- 근거 :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, 제86조 제3호
- 처분내용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② 공사·도매시장법인 합동단속반 운영

□ 단속 인원 : 1일 3명

○ 도매시장법인 : 2명(서울건해산물)

○ 공사 : 1명

- 주간 : 수산팀 현장 근무자, 야간(18시 이후) : 당일 당직 근무자

□ 운영 기간 : 2017.3.27~4.21(4주간)

○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연장 여부 검토

□ 주요 임무

○ 수산시장에서 청과물을 분산하는 차량 시장 외부 퇴거 조치

○ 물량 분산자 인적사항 등 조사

- 차량번호, 운전자 및 출하자 인적사항, 적재량 및 품목, 물량 분산처 등

○ 청과 중도매인 직접 위탁 물량 여부 확인

○ 안내장 배포

- 단속 사유 및 시장외부 퇴거 조치의 필요성 설명

- 물량 분산 행위 지속 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사전 예고

Ⅲ 행정 사항

□ 환경교통팀 : 정기 주차권 해지

○ 3회 이상 물량 분산행위로 적발된 자

□ 시장개선팀 : 중도매인 개인위탁 행위 조치

○ 청과 중도매인 개인위탁 물량 여부 확인 및 적발 시 조치

첨부 1. 수산시장 내 청과물 분산차량 단속일지(양식) 1부

2. 수산시장 내 청과물 분산행위 단속 안내문 1부. 끝.

수산시장 내 청과물 분산 행위 단속 일지

(조사일 : 2017. . .)

분산 차량

- 차량번호 :
- 운전자 :
- 주차위치 :

적재 물량

- 출하자 : (출하지역 :)
- 적재물량

품목	단위	수량	분산처

- 도매시장 물량 관리자(주재화주) :

현장사진(2매)

--	--

조사자 : (인) (인) (인)

수산물시장 내 물량 분산 행위 단속 안내

귀하께서 주차하고 농산물을 분산하는 이곳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'수산물시장'입니다.

귀하의 무단 주차 및 농산물 분산행위로 인하여 수산물 출하차량의 신속한 하역이 불가하여 생산자·유통인·소비자 등 수산물 거래 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

또한,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 이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타 시장에 판매될 물량을 이적(하역, 적재)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.

따라서 수산물시장에서 타 시장으로 농산물을 분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만약,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정기주차권 회수(주차료 면제 불가) ② 과태료 부과(25~100만원) ③ 형사고발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)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.

2017. 3. 27.

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 장